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69
----------	-------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발 의 자 : 정성국 · 서천호 · 박충권
정동만 · 조경태 · 김용태
김 건 · 안철수 · 조승환
김대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4,6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444보다 낮은 수준이며, 초등교육(\$19,749) 및 중등교육(\$25,267)보다도 낮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임.

17년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대학의 재정 악화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대학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방안으로 대학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4는 1천만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의 30%를 공제하도록 하는 특별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 및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100/110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이처럼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10만 원 전액을 사실상 세금으로 돌려주고 있으나, 개인이 대학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어 대학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등) ① 거주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학기부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부금 중 10만원 이하 금액: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
2. 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금액: 그 금액의 100분의 15
3. 기부금 중 1천만원 초과 금액: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른 대학기부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대학기부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에서 공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6조의2(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등) ① 거주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학기부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u> <u>1. 기부금 중 10만원 이하 금액: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u> <u>2. 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금액: 그 금액의 100분의 15</u> <u>3. 기부금 중 1천만원 초과 금액: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u> <u>② 제1항에 따른 대학기부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u>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대 학기부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